

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37조제1항중 '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'를 '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'로 하며 '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'를 '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'로 하고 '변경계획을 작성하여'를 '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'로 하며,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4항 단서중 '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'를 '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'로 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 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3(공유재산 매각승인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5조중 제5호 및 제7호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전기요금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
7. 수도요금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
8.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중요재산)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</p> <p>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.</p> <p>③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p> <p>1.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할 경우</p> <p>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</p> <p>3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·처분 하는 경우</p> <p>4.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</p>	<p>제4조 (삭제)</p>

현행	개정안
<p>5.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에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</p>	
<p>6.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	
<p>제37조 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 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37조 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- - - - - - - - - -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- - - - - - - - - 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을 - - - - - - - - - - 변경계획 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 지- - - - -</p>
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② (삭제)</p>
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·처분하였을 경 우에는 재산의 소재지, 지목,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③ (삭제)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55조 (관사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생략) 5. 전기요금 (단, 1급관사에 한함) 6. (생략) 7. 수도요금 (단, 1급관사에 한함) 8.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(단, 1급관사에 한함) 	<p>제55조 (관사운영비의 부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전기요금 (단, 1급 - 2급관사에 한함) 6. (현행과 같음) 7. 수도요금 (단, 1급 - 2급관사에 한함) 8.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(단, 1급 - 2급관사에 한함)